

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6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시정 주요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한시기구의 연장 및 신설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‘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(1개) 및 기존 한시기구(3개)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기한 연장

- (신설) 한강사업추진단 신설
  - ▶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 신설('23.7.17. ~ '24.7.16.)
- (연장) 주택공급기획관·균형발전기획관·자원회수시설추진단 존속기한 연장
  - ▶ 존속기한 1년 연장('23.8.19. ~ '24.8.18.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####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해당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관련 규정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사항:  
협의 완료

#### 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'23. 5. 19. ~ 5. 23.) 결과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(☎2133-672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강사업추진단을 두며, 한강 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한강이용증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수상이용 활성화 및 수상여가 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
3. 수상관광레저 콘텐츠 강화 및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항

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“2023년 8월 18일”을 “2024년 8월 18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21조제4항의 한강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.

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**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·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으로

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관련 비용추계는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첨부되어 있으므로

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

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(☎ 2133-6729)